

의안번호	2200938
의 퇴 인	정희용 의원
회 답 일	2024. 7. 4.
추계번호	24F13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지연금 담보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재산세는 2025년 22억원, 2029년 38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49억원 (연평균 3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재산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제35조의2)	-22	-26	-29	-33	-38	-149	-30

주: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5조의2 (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)	○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-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35조의2 (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며, 현행 적용기한이 2024년 말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(안 제35조의2)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'19~'23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매년 감면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동 감면에 대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향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감면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2019~2023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연평균 증감률: 14.1%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개요)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공시가격 6억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재산세 감면
 - 일반적으로 농지는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므로, 공시가격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29.4만원 수준
 - $6\text{억원} \times 70\%(\text{공정시장가액비율}) \times 0.07\%(\text{농지 분리과세 세율}) = 29.4\text{만원}$
- (감면실적)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은 2018년 7억에서 2022년 1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
 - 지속적인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이 증가하고 있음

[표 2]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 추이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실적	7	9	11	13	15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각 년도

[표 16]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: 2019~2023년

(단위: 건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'19~'23년 연평균 증감률
가입자수	14,492	17,098	19,178	21,708	24,590	14.1

자료: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

(2) 추계방법

- 2022년 감면실적을 기준으로 향후 2019~2023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연평균 증감률 14.1%에 따라 감면실적이 증가한다고 가정
 - 향후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농지연금 누적 가입수 증가에 따라 매년 14.1%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

(3) 추계결과

-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말에서 2029년 12월 말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재산세는 2025년 22억원, 2029년 38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49억원(연평균 3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재산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제35조의2)	-22	-26	-29	-33	-38	-149	-30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